



주요심결사례

2003. 4.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2002단체 1468)</p>	<p>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동래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이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인 학교급식용 조리기구를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하려고 하자, 단체수의계약시 적용되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 이하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향후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계약단가" 이하의 금액으로는 응찰을 삼가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 지역 조합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교육 또는 공문시달을 통해 협조 요청하는 등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용 조리기구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한편, 2002. 7. 20. 동래교육청, 2002. 7. 24. 북부교육청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자신의 조합원인 (주)삼주이엔지 및 한신주방냉동이 "계약단가" 이하의 금액으로 응찰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2002. 8. 29. 제10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덤핑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삼주이엔지 및 한신주방냉동에 대하여 3년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을 중지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2002. 10. 4. 이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 전체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주)삼주이엔지 및 한신주방냉동에게는 별도로 통보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35,100천원</p>
<p>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의 경쟁제</p>	<p>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2002. 2. 15. 제22차 의장단회의에서 협회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처</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를</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단체0292)</p>	<p>리 등 각종 사업이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혜택이 있으므로, 비회원들에게 회비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1차로 문서발송, 2차로 법적인 대응 등을 통해 협회가입 및 회비납부를 촉구하기로 결의하여, 2002. 2. 19.과 2002. 3. 16. 강화익스프레스의 250개 비회원들에게 “협회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들도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2. 3. 15.까지 협회가입을 하기 바람직하며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 대하여는 특별회비 및 운송주선사업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월회비를 부과징수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02. 5. 15. 실제로 가입비 및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회비 체납 내역서」를 비회원들에게 통보하였고, 2002. 7. 23. 공팔공익스프레스의 22개 비회원들에게 “2002. 8. 10.까지 협회가입을 하기 바람직하며,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 대하여는 특별회비 및 운송주선사업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월회비를 부과징수 하겠다”고 통보, 이에 따라 연수운동, (주)인천냉동, (주)문성통운 등 3개 업체를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천광역시지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자신의 회원인 한국특수화물추레라가 2000. 12. 29. 협회를 탈퇴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그때까지 회비 1,830천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00. 12. 29.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비를 부과하다가, 2002. 1. 7. 에 한국특수화물추레라가 미납된 회비 중 일부 납부의사를 밝히자, 기존 미납된 회비 1,830천원과 2000. 12. 29. 이후에 부과된 회비 360천원을 합하여 2,190천원이 미납된 회비라고 하여 그 중 1,500천원을 받고 미납금액 690천원은 추후 납부토록 하면서 탈퇴를 인정,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1항3호 위반</p>	<p>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영도구 지역 9개 유선방송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3부사0248)</p>	<p>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 삼진유선방송사, 미영유선방송사, 수정유선방송사, 범천유선방송, 초량유선방송, 영도종합유선방송, 명중유선, 새부산동삼케이블방송은 2001. 7. 10.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 사무실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전송선로 및 설비의 공동이용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협업계약서에는 “신규가입자의 가설과 수금 및 관리는 을의 업무로 하며, 갑은 저가형(중계형) 신규가입자는 취급하지 않는다”(제4조제2항제6호), “본 계약서 체결 후 저가형(중계형) 수신료는 월 4,000원, 이전비는 건당 10,000원, 신규가입자 설치비는 35,000원으로 단기간내 환원한다”(제4조제2항제7호), “월정 수신료는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제8조제4항)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위 계약서 제4조제2항제6호 후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1. 6. 30.자를 기준으로 이들에 가입된 가입자 비율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이를 지켰으며, 제4조제2항제7호의 내용에 따라 2000년부터 4,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던 저가형(중계형) 단독주택 수신료를 2001.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2000년 이전 수준인 4,000원으로 환원하였으나, 이전비, 신규가입자 설치비는 협업계약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한편,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도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구두약정 함으로써 협업계약서 제4조제2항제6호 후단의 내용은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유선방송사업자와 협업계약을 통해 저가형(중계형) 신규가입자의 유치 여부, 신규가입자의 유치 비율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및 수신료, 이전비, 신규가입자 설치비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01. 7. 10. 체결한 협업계약서의 내용 중 제4조제2항제6호 후단 및 제7호, 제8조제4항의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사항을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p>



2003. 4.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3단체0285)</p>	<p>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01. 10. 17. 제3회 이사회에 “비회원에 대한 행정업무처리 수수료징수규정(안) 제정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후 시행하였고, 정부위탁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건당 2,000원, 사업의 휴지·폐지신고는 건당 1,400원을 받아왔으나 위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회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회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20배가 넘는 건당 4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들이 위 규정의 제정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수수료기준 승인을 받지 않고 비회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시행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 충청남도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충청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인천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단체0284)</p>	<p>인천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각 시·군·구청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자를 통보해 오면 신규등록자들에게 “개별화물협회 특별회비 부과 및 안내공문 발송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해 왔는데, 이들은 협회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 휴지·폐지신고 등 정부위탁업무와 법정업무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업무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고, 입회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에게 입회비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보내는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천광역시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벤트리(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 1599)</p>	<p>벤트리(주)는 2002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등에 “VNP54의 성기능 개선효과가 비아그라보다 낫다고?”라는 헤드카피와 함께 “고려대학교의 임상실험결과 VNP54를 투여한 환자중 81.0%(비아그라 국내 임상실험결과 81.2%)가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라는 바다카피 아래 “비아그라는 일시적인 치료이지만 VNP54는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비아그라는 보고되었지만 VNP54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비아그라는 필요하지만 VNP54는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들이 (VNP54)와 관련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동 제품은 식품으로서 의약품인 비아그라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효능과 비교광고 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제품도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비교광고 하였고, VNP001이 주 원료인 ‘올카바스’로 실험을 하였으면서도 VNP54의 실험결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 하고, 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사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교수의 보도자료를 광고에 인용하였으면서도 동 연구결과가 자사와는 관련이 없는 연구결과인 것처럼 기만하여 광고하는 행위 및 임상 실험결과 개선효과를 발표 함에 있어 유효성 비율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비아그라와 대조군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실험결과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동 실험결과가 비아그라와 대조군 실험결과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으며, VNP54가 발기부전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하는 행위 및 소수의 실험대상수로 한 실험결과만을 가지고 자사의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3. 4.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3단체0286)</p>	<p>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1999. 11. 10. 대회의실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연합회 회원인 박길부 등 10인이 대행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체결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논의하고 2000년도 대행수수료를 1999년도 수준으로 동결기로 결정하였고, 2000. 12. 20. 동 대회의실에서 협회측 안인순 회장 등 4인과 대행연합회측 김성태 등 5인이 대행수수료 수준에 관하여 논의하여 2001년도 대행수수료를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기로 결정하였으며, 2001. 11. 28. 제주도 뉴크라운관광호텔에서 안인순 회장 등 2인과 김성태 등 11인이 2002년도 대행수수료를 용량별로 전년대비 5% 범위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대행연합회가 2001. 12. 7. 제출한 2002년도 대행수수료 조정안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 후 3,000부를 인쇄, 2001. 12. 12. 20개 지회를 통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였고, 매년도 말에 다음년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결정하여 왔으며, 그 절차는 대행연합회가 안전공사 수수료 수준을 참고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의 자문기구인 대행협의회에 건의하면 대행협의회에서 심의하는 형태로 수수료 수준을 최종 결정한 후 자신의 명의로 전국지회를 통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자신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00백만원</p>
<p>대한건설기계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단체0288)</p>	<p>대한건설기계협회는 정관 제7조제1호에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모두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8. 3. 11. 정기총회시 건설기계검사기관이 별도 설립되면서 회비징수가 어렵게 되자 회비징수에 대한 문제를 회장에게 일임키로 의결하였으며, 1998. 5. 22. 제4차 이사회에서 각 시·도지회에 협회비 징수 직원을 해당 검사</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소에 파견하여 회비를 징수하기로 의결, 각 시·도지회의 직원 1명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6개 시·도, 17개 검사소)에 상주하면서 수집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2000. 1. 6. 기납부한 회비반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협회안내 전단지 30,000매를 제작하여 시·도지회(1,500매)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8,500매)에 송부하고 건설기계 검사시 등에 배포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입회수속도 하지 않고 입회비도 내지 않은 비회원들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검사 신청시 검사수수료와 함께 회비를 징수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모두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건설기계검사기관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회비납부 의무가 없는 비회원들에게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한편, 2001. 3. 7. 정기총회시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관리료 덩핑 및 타회사 소속 연명신고자 영입경쟁 등을 통제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도지회를 통해 타회사 소속 연명신고자 영입경쟁 실태를 조사하였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 6. 5. 진아중기(주)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업계질서문란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란 제목으로 타회사 소속 연명신고자 영입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각 시·도지회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계도하도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00백만원</p>

2003. 4.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철도청의 66kV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3공동0339)</p>	<p>일진전기(주), 엘지전선(주), 대한전선(주)의 영업담당 직원들인 김한중(엘지), 최창수(대한), 배철규(일진) 등 3인은 2000년 9월 중순경 서울시 남대문시장에 소재한 은호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회사의 제품생산 일정에 차질</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진전기(주) : 9,400,000원 · 엘지전선(주) : 8,300,000원 · 대한전선(주) : 7,300,000원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 일정상 여유가 있는 회사가 철도청의 66kV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을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2000. 10. 18, 2000. 11. 29, 그리고 2001. 7. 27. 실시된 철도청 및 조달청의 66kV전력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9월 중순경의 합의대로 생산일정에 여유가 있는 업체가 낙찰받도록 낙찰예정자는 예상 예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나머지 업체는 예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는 철도청 및 조달청의 66kV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됨으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위반</p>	
<p>(주)립싸이언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 광고1864)</p>	<p>(주)립싸이언텍은 2001. 9월~2002. 7월 기간 중 일간지를 통하여 자기의 운전유도장치인 '달리세이버'를 광고하면서 "과학기술부 선정 6대 신기술에너지절약 달리세이버"라고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과학기술부가 마치 자신의 제품을 에너지 절약 6대 신기술로 선정한 것처럼 광고하였고,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 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이란 제하로 2002.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일반운전자의 차량인 13개 승용차 차종에 '달리세이버' 장치를 탑재한 상태하의 주행연비와 이들 차량의 공인연비를 비교평가 하면서 '달리세이버' 장치 탑재하의 주행연비가 18.7km/l ~31.8km/l로 나타나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내었으며 "420km 주행후 연료소모량 눈으로 확인한다!"의 표현과 함께 8개의 자동차연료 게이지 사진과 주행실험에 참가한 20명의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을 나타내면서 "420km를 주행해도 연료가 3/4이상 남아 있는 추이로 볼 때 1,600km를 누구나 무난히 주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을 자동차에 장착할 경우 마치 자동차연료를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3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3. 4. 29. 심결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3단체0291)</p>	<p>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02. 6. 5.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위탁업무 처리거부로 가입비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로 하고, 비회원들이 정부위탁업무처리를 요청하면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가입비 및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회비 등을 납부 받고 정부위탁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며, 2002. 8월 경에 인천광역시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이인제(비회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을 하려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자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위탁업무인 사업의 폐지신고 처리를 해 주지 않다가 이인제가 부평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자신에게 이첩되자, 2002. 8. 29. 인용협 200-74호(제목 : 민원제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지신고 이첩서류 반송 건)로 부평구청장에게 이인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지신고는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할 경우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며 처리를 해 주지 않다가, 이인제가 재차 자신을 방문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요청하자, 가입비 및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회비 약 30만원 중 15만원을 받고 동 업무를 처리해 주는 등 정부위탁업무처리를 빌미로 삼아 비회원들에게 가입비 및 등록일자로부터 계산된 회비를 받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